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0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정준호,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춘곤, 남창진,  
박강산, 박상혁,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왕정순,  
,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임규호, 전병주,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26  
명)

## 1. 제안이유

-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상용화 시대 준비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이 반영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보급 정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제2항)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함(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① (생략)  <u>&lt;신설&gt;</u></p> <p>②、③ (생략)</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p> <p>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u></p> <p>② (생략)</p>	<p>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하며,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            -----.</p> <p>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책무)제2항에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제2항 및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제1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